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865호)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7. 3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7. 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4. 7. 1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세입세출결산 총괄
-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 계속비 집행
- 예비비 집행
-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
- 채무 부담행위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기금 결산보고서
- 채권 현재액 보고서
- 채무 결산보고서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고성군 결산감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에서 2003년도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50,853,392천원이지만 357,720,83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354,574,972천원이며, 미수납액(결손처분 제외)은 3,124,86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349,419,416천원이며, 수납액은 346,415,989천원으로 미수납액(결손처분제외)은 2,983,464천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7개분야의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301,423천원, 수납액은 8,158,983천원으로 미수납액(결손처분제외)은 141,397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2003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0,853,392천원에서 지출이 176,405,396천원으로 집행잔액이 174,447,996천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59,420,225천원이고 불용액이 15,027,77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개괄적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으나 과년도세에서 972,373천원, 세외수입이 1,543,063천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중 도로사용료 13,800천원 국공유재산임대 및 사용료 18,120천원, 과태료 136,180천원 등의 세외수입에서 고액체납이 나타났습니다.
- 세출분야의 일반회계에서 49.9%가 집행되고 익년도 이월예산이 50.1%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극히 저조하였음은 토지보상, 국도비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 등의 사유도 있지만 예산현액에 의거 충분한 집행의 기회가 있는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으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에도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었으며,
- 계속비 집행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 예비비 지출은 예산현액 6,098,789천원으로서 동해면 고성군의회의원 보궐선거 외 3건에 169,80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52,448천원을 지출하고 17,35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고성군의회청사 신축공사 설계비 외 218건으로 158,582,858천원입니다.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6종으로 현재액 2,079,486천원에서 242,909천원을 지출하고 1,836,57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3종으로 2003년도에 606,921천원이 발생하고 886,122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2,525,126천원의 채권현재액이 이월되었습니다.
-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0,855,388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014,101천원이 발생하고 3,579,775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599,992천원입니다.
-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7,522필지에 64,718,797천원, 건물 172동에 4,058,928천원, 선박 등 기타 물건 490,508천원으로 총 69,268,233천원 상당액입니다.
-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결산승인안은 2003 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

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03년도의 예산회계적 행정행위의 책임을 해제하는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 또한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 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결산검사에서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4. 7. 1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